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7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3월 10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변경된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 사항과 「미특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운행제한 유예 대상에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「미특법」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2, 제8조, 제10조, 제12조)
-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유예 대상 설정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사업장,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”을 “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”로 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 중 “제5조제1항”을 “제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및 제6호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 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”을 “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행 제한의”를 “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,”로 한다.

안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안 제12조제2항 중 “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시행령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)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
4. 시장이 정한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

②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·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</p> <p>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·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사업장,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·조정 3. (생략) 4. 공공·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. ~ 6. (생략)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〈신설〉</p>	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사업장,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·조정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폐쇄 또는 이용제한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 관리 등)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, 사업장, 공사장 및 주</p>	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<u>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-----</u>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 관리 등)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<u>제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및 제6호</u>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민 등에게 신문·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지역)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.

제7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차량)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.
② (생략)

제8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)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을 준용한다.

〈신 설〉

제9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단속 담당 공무원(이하 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

제6조(운행제한 대상지역)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 -----.

제7조(운행제한 대상차량)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-----.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) ①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-----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.
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의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-----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-----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운행제한 대상지역) 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(운행제한 대상차량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(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등) ① ----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다.

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,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(개정안과 같음)

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
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

과 등)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
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
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
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
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
과를 철회할 수 있다.

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

(생략)

②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
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
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「국민
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
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
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
있다.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

과 등) ① ---- 제5조제1항 및
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〈신 설〉

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
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-----

-----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
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)
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
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5조

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

과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
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
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
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

(개정안과 같음)

② ----- 시행령 -----

-----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
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)
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
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

의2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①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 대기관리권 역외 등록 자동차

②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

③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적재량 2톤 미만 자동차

④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자동차

⑤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

⑥ 조례 공포 전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

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
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

4. 시장이 정한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

②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·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사업장,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”을 “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폐쇄”를 “폐쇄 또는 이용제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)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 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, 사업장,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·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”을“(운행제한 대상지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”를 “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)”을“(운행제한 대상차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제1항1호의”를 “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)”를 “(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운행제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”으로, “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을 준용한다”를 “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, 시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운행제한”을 “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운행제한”을 “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시행령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)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
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
 4. 시장이 정한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
- ②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·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사업장,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·조정</u> 3. (생략) 4. <u>공공·행정기관 주차장 폐쇄</u> 5. ~ 6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〈신 설〉</p>	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업의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폐쇄 또는 이용제한</u> 5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제5조의2(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, 사업장,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</u></p>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.

제7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)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)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을 준용한다.

〈신 설〉

제9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단속 담당공무원(이하 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운행제한 대상지역)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 -----
-----.

제7조(운행제한 대상차량)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) ①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----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다.

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,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) ① --
--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-----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) ①

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) ①

-----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2조(취약계층 등의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행령 -----

-----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)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 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

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
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

4. 시장이 정한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

②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·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